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國際機構및 條約의 紙上探訪

○……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및 條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基……○
○……礎的인 質問같지만 선뜻 體系的 對答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
○……들 機構 및 條約과 접할 機會가 적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知的所有權의 國際化時代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機構 및 條約을……○
○……모르고는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本誌는 紙上探訪을 마……○
○……련, 이들 機構 및 條約을 紹介하기로 했다.……<金 亨 昊 記>……○

◉ 第 6 回 ◉

■ 이달의 目次 ■

■ 特許協力條約 (PCT)
■ 부다페스트條約
■ 니스協定
<다음號에 繼續>

■ 特許協力條約(PCT)

▲ 正式名稱

Patent Cooperation Treaty,
done at Washington on June 19, 1970,
amended on october 2, 1979,
and modified on February 3, 1984

▲ 加入國 現況

· 파리協約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나 이 條約에 加入할 수 있으며, 加入國이 되기 위해서는 加入書나 비준서를 WIPO 事務局長에 게기탁하여야 한다.

· 1986年 11月 現在 이 條約의 當事國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바르바도스, 벨지움, 브라질, 불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챠드, 콩고, 北韓,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가봉, 西獨, 헝가리, 이태리, 日本, 리히텐스타인, 룩셈부르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韓國, 루마니아, 세네갈, 소련, 스리랑카, 수단, 스웨덴, 스위스, 토고, 영국 및 美國등 39個國이다.

▲ 沿革

—1966年 9月 파리同盟 執行委員會에서 美國代表가 提案.

—BIRPI가 1967年부터 檢討始作

—1970年 3月 豫備基草會議

—1970年 5月 25日~6月 19日까지 워싱턴에서 開催된 外交會議에서 作成

—美國, 英國, 西獨등 20個國이 署名하고 1970年 末까지 15個國이 追加署名

—1978. 1. 24 美國, 英國, 西獨등 13個國에 대해 PCT가 發効됨(條約 第63條)

—1984. 8.10 우리나라가 36번째로 加入.

▲ 適用範圍

이 條約에서 特許라 함은 發明特許뿐만 아니라 發明者證, 實用證, 實用新案, 追加特許, 追加發明者證 및 追加實用證까지도 포함한다.

▲ 主要 內容

이 條約은 "國際" 特許出願을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出願은 모든 當事國의 國民이나 住所를 갖고 있는 者에 의해 提出될 수 있으며 當該 出願人의 國籍 또는 住所가 있는 當事國의 國內官廳에 提出되어야 한다.

만일 當該 出願人이 유럽特許協約의 一員인 當事國의 國民이거나 住所를 갖고 있는 者라면, 이 경우의 國際出願은 또한 유럽特許廳(EPO)에 提出될 수도 있

다. 또한 만일 當該 出願人이 스리랑카 혹은 아프리카 知的所有權機構(OAPI)의 會員國인 當事國의 國民이거나 住所를 갖고 있다면 그 國際出願은 WIPO에 提出되어야 한다.

이 條約은 모든 國際出願에 적용될 形式的 要件들을 상세히 規定하였다. 出願人은 모든 當事國가운데 自己의 國際出願에 대해 保護를 얻고자 하는 國家(指定國)를 指定한다.

各 指定國에 한 國際特許出願의 效果는 當該 國家의 國內官廳에 提出된 國內特許出願과 同一하다. 指定國이 유럽特許協約(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加入國인 경우에는, 當該 出願人은 유럽特許出願의 효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指定國이 벨지움, 프랑스 및 이태리인 경우에는 그나라의 國內特許出願보다는 오히려 유럽特許出願의 효과를 선택하여야 한다.

指定國이 OAPI의 一員인 경우에는 그 效果는 OAPI에 提出된 地域出願의 것과 동일하다.

國際出願이 되면 當該 出願은 "國際調査"를 받게 된다. 이러한 調査는 主要 國內官廳中 하나 또는 유럽特許廳(EPO)에 의해 수행되며 그 結果로 國際出願된 發明의 特許性에 영향을 주는 刊行物(주로 대다수의 特許를 許與하는 國家들의 特許文獻)의 인용문헌 目錄인 "國際調査報告書"가 作成된다.

作成된 國際調査報告書는 出願人에게 통지되어 出願의 取下 與否를 決定할 수 있도록 한다. 當該 報告書가 特許의 許與 가능성이 없음을 말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出願을 取下하게 될 것이다.

當該 國際出願이 取下되지 않은 경우에는 國際調査報告書와 함께 WIPO에 의해 公開되며 WIPO에 의해 各 指定國 國內官廳에 송달된다.

當該 出願人은 國際出願한 때로부터 20個月(當該 出願이 先出願의 優先權을 가진 경우에는 先出願後 20個月)이 경과할 때까지 各 指定官廳에 公式言語로 된 當該出願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20個月의 期間은 出願人이 主要 特許廳中 하나에 의해 作成되며 出願發明의 特許性에 관한 豫備的이며 구속력이 없는 意見을 提供하는 報告書인 "國際豫備審査報告書"를 要請한 경우에는 12個月間 더 연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國際豫備審査의 利點은 덴마크, 러히텐스타인, 노르웨이, 韓國, 스위스 및 美國등 6個國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PCT에 의한 節次는 出願人, 特許廳 및 一般 公衆을 위해 큰 잇점을 가지고 있다.

(i) 當該 出願人은 外國에서 保護를 획득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各國에서 特許代理人의 선임, 필요한 번역문의 준비 및 國內手數料의 納付등을 위해 PCT 以外의 節次에서 허용되었던 期間보다 8個月 또는 18個月이 더 많은 期間을 가진다.

當該 出願人의 國際出願이 規定된 形式에 맞는다면 어떠한 指定官廳에 의해서도 形式的인 것을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는다.

國際調査報告書를 근거로 하여 當該出願人은 自己의 發明의 特許許與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國際豫備審査報告書에 근거하여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진다.

(ii) 特許廳들의 調査 및 審査業務는 各 國際出願에 첨부된 國際調査報告書 및 國際豫備審査報告書의 덕택으로 상당히 감소하거나 실제적으로 없어지기도 한다.

(iii) 各 國際出願이 國際調査報告書와 같이 公開되기 때문에 누구나 當該出願發明에 대하여 근거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其他 PCT에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WZPO 刊行物인 "PCT Applicant's Guide"를 참고 하여 얻을 수 있다.

▒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微生物寄託의 國際認定에 관한 부다페스트 條約

▲ 正式名稱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done at Budapest on April 28, 1977,

modified in 1980.

▲ 加入國 現況

파리協約의 當事國인 國家는 본條約의 加入國이 될 수 있으며 加入키 위하여는 加入書나 비준서를 WIPO 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1986年 11月 現在 이 條約의 當事國은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덴마아크, 필란드, 프랑스, 西獨, 헝가리, 이태리, 日本, 러히텐스타인, 노르웨이, 필리핀, 소련,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英國 및 美國등 19個國이며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이 條約에 加入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 條約의 必要性

特許의 許與를 위한 要件中의 하나는 發明의 公開이

다. 통상적으로, 發明의 公開는 書面으로 된 明細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떠한 發明이 公衆에게 利用되지 않는 微生物이나 그 微生物의 利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明細書만으로는 公開가 不充分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은 國家(그 數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들의 特許節次에 있어서 書面으로 된 明細書뿐만 아니라 當該 微生物의 標本을 指定된 機關에 寄託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理由이다.

各國의 特許廳들은 標本의 保存 및 분양을 위해 生存, 오염으로 부터 保護, 오염으로부터 건강이나 환경을 보존키 위하여 특수기술이나 장비를 요하는 微生物을 처리할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개국에서 微生物自體 또는 微生物의 利用을 포함한 發明을 保護받고자 할때에는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當該 微生物의 寄託節次가 이들 各國에서 되풀이 되어야만 할 수 있었다.

▲ 主要 內容

이러한 重復 寄託을 없애거나 감소키 위하여 本 條約은 特許節次의 目的上 微生物의 寄託을 허용하거나 要求하는 모든 締約國은 그러한 目的을 위해 自國의 영역내의 후술하는 機關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여하한 "國際寄託機關"에 대해서한 微生物의 寄託을 認定해야 한다는 것을 約定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國際寄託機關의 하나에 대해서한 한번의 寄託은 모든 締約國의 特許廳 및 地域 特許廳이 本 條約의 效力을 認定할 것을 선언한 경우 그러한 地域特許廳의 特許節次의 目的을 위하여 充分할 것이다.

유럽特許廳은 그러한 선언을 하였다. 條約에서 말하는 "國際寄託機關"은 代表的으로 "Culture collection"으로 微生物을 保管할 수 있는 科學的 機關이다. 그러한 機關은 條約上에 定한 要件을 충족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충족하리라는 취지의 보증이 締約國의 하나에 의해 WIPO 事務局長에게 提出됨으로써 "國際寄託機關"의 지위를 획득한다.

條約에 따른 規則은 寄託된 微生物의 標本을 분양받을 수 있는 者 및 그 時期등에 관한 細部 規定과, 寄託된 微生物을 분양할 수 없을 경우에 更新寄託을 위하여 적용하는 規定등을 포함하고 있다.

本 條約은 우선적으로 여러개의 締約國에 特許를 出願한 寄託者에게 유리하다. 條約에 規定된 節次에 의한 微生物의 寄託은 寄託人에게 비용을 절약하게 할 것이며 그의 安全을 신장시켜 줄 것이다.

여기에서 비용절감은 寄託者가 微生物이 관련하여 特許出願한 모든 締約國 各各에 當該 微生物을 寄託하는 대신에 하나의 寄託所에 오직 한번 當該 微生物을 寄託하면 되기때문이다.

그 結果로써 保護를 구하는 締約國들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있어서 들었던 寄託 手數料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標章登錄을 위한 商品 및 서비스의 國際分類에 관한 니스 協定

▲ 正式名稱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of June 15, 1957,
as revised at stockholm on July 14, 1967,
and at Geneva on May 13, 1977,
and amended in 1979.

▲ 加入國 現況

파리協約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나 이 協定에 加入할 수 있으며 加入國이 되기 위해서는 加入書나 비준서를 WIPO 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1986年 11月 現在 이 協定의 當事國은 알제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바르바도스, 벨지움, 베닌, 체코슬로바키아, 덴마아크, 필란드, 프랑스, 東獨, 西獨,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레바논, 리히텐스타인, 룩셈부르그, 모나코, 모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루투갈, 소련,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튀니지, 英國, 美國, 및 유고슬라비아 등 83個國이다.

▲ 주요내용

본 協定은 商標 및 서비스標登錄을 위한 商品 및 서비스의 分類를 規定하고 있다.

當該 分類는 마드리드 協定에 근거한 國際登錄 및 各 締約國의 國內登錄에 있어서 使用된다.

分類는 類別 目錄(商品에 대해 34個類, 서비스에 대해 8個類)과 商品 및 서비스의 알파벳순 目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商品 및 서비스의 알파벳순 目錄은 10,000個 以上의 項目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目錄들은 모든 締約國을 代表하는 專門家委員會에 의해 수시로 수정 및 보충된다. 〈계속〉